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- 91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-477('18.8.2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변경 사항

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표자	김주미, 유환승	유환승	
주소	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3로 77	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3로 70	
유효기간	2021년 7월 25일까지	2024년 7월 25일까지	

2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